

## 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의원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기밀의 누설,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나. 의원의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을 명시하고, 겸직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다.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의원의 회피와 재산 등록 및 신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영리행위가 제한되는 공공단체, 관리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이 겸직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 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마.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관한 신고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바. 징계의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및 안 별표2).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8-635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12월 30일

발의의원 : 장인수,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의원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기밀의 누설,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나. 의원의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을 명시하고, 겸직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다.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의원의 회피와 재산 등록 및 신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라. 영리행위가 제한되는 공공단체, 관리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이 겸직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 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마.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관한 신고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 바. 징계의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및 안 별표2).

##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현행 조례

##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준수) 오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오산시 및 오산시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 등 금지)**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산시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기관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3. 오산시로 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등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4. 오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제10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

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오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 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윤리심사)**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오산시의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오산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오산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오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오산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오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연 1회 제10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의원이 오산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오산시와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오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2조 관련)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지방의원으로서 지방 자치가 민족번영과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과 시민의 뜻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상 서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오 산 시 의 회 의 원

[별표2]

## 정 계 기 준

(제1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겸직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현행조례]

제정 2006년 7월 31일 조례 제 883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2009년 10월 14일 조례 제1052호  
(제명개정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품위 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 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 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 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겸직금지 등)**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0. 14>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개인 명의로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서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회의출석 의무)**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국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성 확보 노력)**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조(징계)**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4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오산시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생략)